

보도시점

배포 후 즉시 사용

배포

2024. 10. 4.(금)

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하고,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확대
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 공포 -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10월 4일(금)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을 공포하였다고 밝혔다.

이번 개정안은 ▲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하여 구급차 등의 운송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, ▲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.

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,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“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” (Pre-KTAS,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)을 제도화하였다(제18조의3).

둘째,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한다(별표 14). 이를 통해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한 질환에 대하여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회복(자발순환, 정상혈압 등)을 돕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* 확대되는 업무범위는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성·효과성 검증,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(2023년 3월 2일)를 거쳐 결정

<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>

현 행 (14종)	개 정 (19종)
가.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(기도기(airway)의 삽입, 기도삽관(intubation),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) 나. 정맥로의 확보 다.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. 약물투여 :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,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(설하) 투여,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,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마.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(10종)	※ 현행 14종 + 5종 추가 < 추가 5종 > ①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②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③ 정맥로의 확보 시 정맥혈 채혈 ④ 심전도 측정 및 전송(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내에 한함) ⑤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(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,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)

셋째,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의 변화에 발맞추어 응급구조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하였다(제35조).

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. 단, 이미 Pre-KTAS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공포 즉시 적용한다.

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“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, 그 결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응급처치 제공, 중증도에 근거한 적절한 의료기관 선정과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 라고 전하며, “앞으로도 응급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” 라고 밝혔다.

<별첨>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안

담당 부서	공공보건정책관 재난의료대응과	책임자	과 장	백영하 (044-202-2640)
		담당자	사무관	한연수 (044-202-2641)
			사무관	윤민수 (044-202-2649)